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062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 2014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2014. 2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가공식품팀)

# 목 차

I. 현 황	1
II. 2013년 주요성과	2
III. 2014년 개선·강화계획	3
IV. 추진방향	3
V. 2014 가공식품안전 세부추진계획	4
1.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4
2.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6
[별표1] 2014년도 기관별 수거검사 목표	8
[별표2]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수거 품목 현황	9
3.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11
4.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13
5.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안전관리	15
6.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17
7.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20
8.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22
9.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24
10.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관리	26
VI. 행정사항	29

# 2014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I. 현 황

□ 총 관리 업소수 : 64,59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등 (단위 : 개소)

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14,865	2,072	12,686	15	92

○ 식품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식품소분업	식용얼음	식품자동 판매기	유통전문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23,560	1,987	52	7,607	2,330	800	10,055	729

○ 건강기능식품·식품운반업·식품냉동냉장업 등 (단위 : 개소)

계	건강기능식품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소계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26,166	25,849	1,875	22,949	1,025	307	10

## ○ 관련 직능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서울시 지회구성 여부	회원수(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전국	서울시		
1	(사)한국떡류식품 가공협회	김재현	구성	18,500	2,100	성북구 안암로 7길 35 (안암동4가)	929-2434 (921-6509)
2	(사)한국압착식용유· 고추가공업 중앙회	이상규	구성	10,000	1,050	성동구 마장로 31길1 (마장동)우일빌딩 302호	2294-2269 (2297-1867)
3	(사)한국추출 가공식품업중앙회	김용덕	구성	12,000	2,500	구로구 공원로6나길 12 (구로동)경방빌딩2층	2631-7313 (2631-7317)
4	서울·경기 두부류 및 무류 제조업협동조합	노정호	구성	2,500	240 (서울·경기)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235 (동교동)	333-2986 (333-2988)
5	(사)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양주환	미구성	157	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관교로 700	031-6282300 (592-9302)
6	(사)한국면류공업 협동조합	경정수	미구성	56	4	중구 을지로 148 (을지로3가)	2273-3428 (2266-3996)

## II. 2013년 주요성과

- 소비자 참여 시·자치구 합동 식품안전 지도·점검
  - 총 12회 / 시민 472명, 공무원 524명 참여
  - 총 1,393개소 점검, 위반 76개소, 위반율 5.5%
    - 처분내역 : 영업소폐쇄 21, 품목정지 5, 영업정지 6, 과태료 30, 기타 14
-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총 12,545건 수거검사 (유해물질 225건 포함)
  - 부적합 53건 (부적합율 0.42%) 행정처분의뢰
-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2,186건
    - 인터넷 2,158건, 신문 25건, 방송 2건, 기타 1건
  -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 428건
    - 고발송치 148건, 영업정지 68건, 기타 212건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도·계몽
  - 78개시장 분기1회 / 식품정보표시판 5,000매 지원

### Ⅲ. 2014년 개선·강화 계획

#### □ 전통시장 위생점검 방식 개선

- 상인들의 부담 경감, 자발적인 위생수준 제고

현 행('13)	개 선('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별 개별점검</li> <li>· 단속위주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축산물·가공식품 통합점검</li> <li>· 교육·지원위주의 위생관리</li> </ul>

#### □ 식품 안전성 검사 목표치 조정

- 실적위주의 수거를 지양하고 취약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합동 기획 수거 기능 강화
    - ☞ '13년 900건에서 → '14년 1,200건으로 상향 조정
  - 일상수거에 치중하는 자치구의 수거건수 조정
    - ☞ '13년 560건에서 → '14년 300건으로 하향 조정

#### □ 식품안전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장보고 강화

- 현장보고장비 (태블릿PC) 활용 활성화
  - 현장보고장비(태블릿 PC)에 실시간 입력('13년 48% → '14년 90%이상)

####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 지도·점검 강화

- 표시기준 지도단속 강화, GMO 정성·정량 검사목표 : 100건

#### □ 부정불량식품 시민 신고사항 전산등록 강화 및 신속처리

- 전화, 우편(팩스), 방문 민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

### Ⅳ. 추진방향

#### □ 중앙, 자치구와 서울시 협업 추진

#### □ 식품제조업소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 지원

#### □ 식품제조판매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 □ 상인회와 공조 전통시장 식품 안전관리 강화

# V. 2014년 가공식품안전 세부추진계획

## 1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 추진배경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전국합동점검 : 연 5회, 식약처와 합동추진
  - 명절, 여름철, 행락철 등 계절별 성수식품 대상
- 기획점검 : 연 7회 이상
  - 언론 이슈, 상습·고의적 위해식품 사범, 자체 정보수집, 신고사항 등
- 예 산 : 100백만원(시비 50%, 국비 50%)

### 2013년도 추진실적

- 총1,393개소 점검, 위반76개소, 위반율 5.5%
  - 위반내역 : 시설기준31, 표시기준4, 영업자준수사항9, 위생적취급기준14, 건강진단11, 기타7
  - 처분내역 : 영업소폐쇄21, 품목정지5, 영업정지6, 과태료30, 기타14

### '14년 추진계획

#### ○ 추진일정

연번	점 검 명	기 간	대 상	주관 (참여)
1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1차 합동단속)	1.6~ 1.17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2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등 지도·점검(2차 합동단속)	3.3~ 3.14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학교), 학교매점, 그린푸드존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교육청)
3	청소년수련원 등 식중독 예방관리(3차 합동단속)	4.7~ 4.18	·청소년수련원, 김밥·도시락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지도·점검	5, 9월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5	김밥·도시락 수거·검사	6월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냉면, 콩국수 등 제공 음식점	서울시 (자치구)
6	하절기 다소비 식품 지도·점검 (4차 합동단속)	6.30~ 7.18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유원지·해수욕장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식약청)
7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등 지도· 점검(5차 합동단속)	8.18~ 8.29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학교), 학교매점, 그린푸드존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교육청)
8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9.1~ 9.5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제사음식 제조업소 등 ·국도·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변 식품취급시설	서울시 (자치구)
9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11.3~ 11.14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서울시 (자치구)
10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지도·점검	12.8~ 12.26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 취급업체	서울시 (자치구)
11	성탄절 대비 지도·점검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 행정사항

###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매일 합동단속 1일 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입력

### ○ 자치구는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서식 3-3-8] 및 [서식 3-3-9] 에 따라 반기 종료 15일까지 시에 보고

## 2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 □ 추진배경

- 시민이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식품 유통차단 및 개선 필요
- 식품 중 잔류농약, 방사능, 곰팡이독소 검사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 식품의 제조·유통·판매단계에서 위해요인 상존
  - '12년 9,392검사 43건 부적합, '13년 12,545건 검사 53건 부적합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14년도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거목표 : 총 8,700건
  - 서울시 1,200건 (유해물질 235건 포함), 자치구 7,500건 (구별 300건)
- 시민다소비 식품 및 유해물질 안정성 수거검사 실시
  - 대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유통식품
  - 내용 :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 검사 강화, 다소비 식품,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 특별관리 반복검사
- 예 산 : 20백만원(시비 50%, 국비 50%)

### 2013년도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 ▶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수거검사
  - 총 12,545건 수거검사 (유해물질 225건 포함)
  - 부적합 53건 (부적합율 0.42%)
- ▶ 안전한 삶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적합제품이 검출되고 있어 상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식품 안전성 검사 필요
  -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 반복 검사



## □ '14년 추진계획

### ○ 시민다소비 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

- 대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유통식품(다소비식품,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내용 :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 검사 강화, 명절, 행락철, 하절기, 김장철 등 시기별 다소비 식품 중점 실시
- 검사항목 : 제품별 규격기준 및 위해항목

### ○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 대상 : 곰팡이독소에 오염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섭취되는 모든 수입 및 유통식품(건조과실류, 조미식품, 곡류 및 두류가공품 등)
- 검사항목 : 국내 기준이 설정된 곰팡이 독소 8종 등

### ○ 태블릿 PC 등 스마트워크를 활용 실시간 정보관리

- 식품 등 수거검사 정보 등 식약처 e-식품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14년 달라지는 사항('13년 대비)

- ▶ 실적위주의 수거를 지양하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합동 기획 수거 기능 강화  
('13년 900건 목표에서 ➡ '14년 1,200건으로 상향 조정)
  - 일상수거에 치중하는 자치구의 수거건수 조정  
('13년 560건에서 ➡ '14년 300건으로 조정)

## □ 행정사항

- 식품수거 담당자는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수거·검사결과 입력철저
- 서울시는 자치구 『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리 통계 현황』 등을 수합 매 분기 종료 후 15일내 식약처에 보고

※ 필요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수거 검사현황 등 자료협조 요청

[별표 1]

**2014년도 기관별 수거검사 목표**

구 분		수거목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특별관리대상식품	수입식품	GMO
총 계		8,700	8,145	555	2,850	1,350	100
서울시본청		1,200	1,145	55	350	100	25
자치구	합 계	7,500	7,000	500	2,500	1,250	75
1	종 로	300	280	20	100	50	3
2	중 구	300	280	20	100	50	3
3	용 산	300	280	20	100	50	3
4	성 동	300	280	20	100	50	3
5	광 진	300	280	20	100	50	3
6	동대문	300	280	20	100	50	3
7	중 량	300	280	20	100	50	3
8	성 북	300	280	20	100	50	3
9	강 북	300	280	20	100	50	3
10	도 봉	300	280	20	100	50	3
11	노 원	300	280	20	100	50	3
12	은 평	300	280	20	100	50	3
13	서대문	300	280	20	100	50	3
14	마 포	300	280	20	100	50	3
15	양 천	300	280	20	100	50	3
16	강 서	300	280	20	100	50	3
17	구 로	300	280	20	100	50	3
18	금 천	300	280	20	100	50	3
19	영등포	300	280	20	100	50	3
20	동 작	300	280	20	100	50	3
21	관 약	300	280	20	100	50	3
22	서 초	300	280	20	100	50	3
23	강 남	300	280	20	100	50	3
24	송 파	300	280	20	100	50	3
25	강 동	300	280	20	100	50	3

※ 특별관리대상식품(부적합률 높은 20개 지정품목), 수입식품, GMO식품 수거검사 목표치는 일반식품수거검사 목표치에 포함된 수치임.

[별표2]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수거 품목 현황**

No	대상식품		수거건수	검사대상			검사건수	
				t-AT	FUM	ZEN		
합계			235	61	56	57	630	
1	곡류	-	호밀	5	1	1	1	15
2			고량미	5	1	1	1	15
3			피(곡류)	3	1	1	1	9
4			귀노아	3	1	1	1	9
5			트리티케일	3	1	1	1	9
6			곡류가공품	5	1	1	1	15
7			옥수수 50% 이상 함유 곡류가공품	5	1	1	1	15
8	콩류	-	잠두	3	1	1	1	9
9			피전피	3	1	1	1	9
10			리마콩	3	1	1	1	9
11			이집트콩	3	1	1	1	9
12			그린콩	3	1	1	1	9
13			렌즈콩	3	1	1	1	9
14			작두콩	3	1	1	1	9
15			두류가공품	5	1	1	1	15
16	견과·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피칸	3	1	1	1	9
17			개암	3	1	1	1	9
18			마카다미아	3	1	1	1	9
19			피스타치오	5	1	1	1	15
20			도토리	5	1	1	1	15
21		유지 종실류	해바라기씨	5	1	1	1	15
22		음료 및 감미종실류	콜라 너트	3	1	1	1	9
2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1	1	1	15
24		우유류	원유	우유	5	1	-	-
25	산양유			5	1	-	-	5
26	유제품		치즈	5	1	-	-	5
27			연유	5	1	-	-	5
28			요구르트(액상)	5	1	-	-	5
29			요구르트(호상)	5	1	-	-	5

No	대상식품		수거건수	검사대상			검사건수		
				t-AT	FUM	ZEN			
30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5	-	1	1	10		
31	가공식품	과자류	만주(모나카)	5	1	1	1	15	
32			비스킷(쿠키)	5	1	1	1	15	
33			스낵과자	5	1	1	1	15	
34			웨이퍼	5	1	1	1	15	
35			크래커	5	1	1	1	15	
36			한과	5	1	1	1	15	
37			빵류	샌드위치	3	1	1	1	9
38		(빵)식빵		3	1	1	1	9	
39		(빵)잼		3	1	1	1	9	
40		초코파이		3	1	1	1	9	
41		(빵)카스텔라		3	1	1	1	9	
42		(빵)커스터드		3	1	1	1	9	
43		케이크		3	1	1	1	9	
44		(빵)크로아상		3	1	1	1	9	
45		(빵)패스트리		3	1	1	1	9	
46		피자		3	1	1	1	9	
47		파이		3	1	1	1	9	
48		핫도그		3	1	1	1	9	
49		떡류		떡류(백설기, 가래떡 등)	3	1	1	1	9
50		면류		라면(봉지, 용기)	3	1	1	1	9
51			우동	3	1	1	1	9	
52			자장면	3	1	1	1	9	
53			쫄면	3	1	1	1	9	
54			칼국수	3	1	1	1	9	
55			(빵)도우넛	3	1	1	1	9	
56		식용유지류	옥수수기름 (옥배유)	5	-	-	1	5	
57		만두류	만두	3	1	1	1	9	
58		즉석 조리식품	죽	3	1	1	1	9	
59	스파게티		3	1	1	1	9		
60	수프가루		3	1	1	1	9		
61	수프(조리된 것)		3	1	1	1	9		
62	다류	녹차, 보이차 등	3	1	1	1	9		
63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옥수수팝콘	3	1	1	1	9		

※ 서울시 식품안전과 수거·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 3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식품안전 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 대응 필요
  -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먹거리의 기대 수준에 부응
- 식품의 안전사고 가능성의 증대 및 유형의 다양화
  - 식품제조공정상 유해물질의 혼입 등 비의도적 식품사고 발생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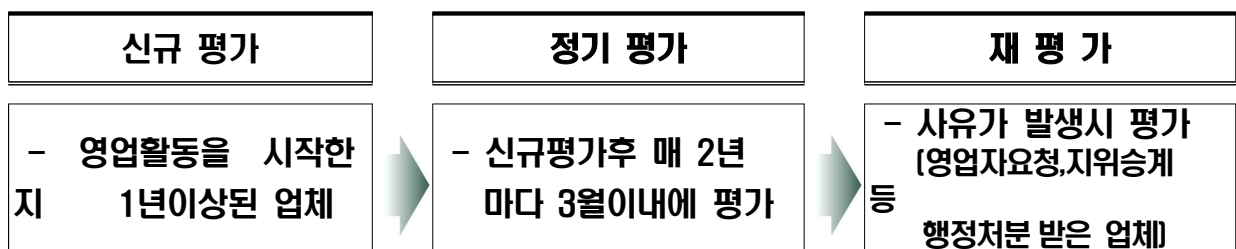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III-3-3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수거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향상

#### 위생관리 등급 구분

- 자율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151~200점)
- 일반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90~150점)
- 중점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0~89점)

#### 위생관리 등급 평가



○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 ▶ 위생관리등급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후 2월이내 자율점검 실시
- 일반관리업체의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중점관리 업체는 매년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2013년도 추진실적

▶ 위생관리등급평가 대상 업체 : 1,681개소

- 위생관리등급평가 : 1,058개소(자율 95, 일반 897, 중점 66)
- 위생관리등급 미평가 : 623개소
  - ☞ 시기미도래,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휴업 등

□ '14년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 수립

※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그 평가결과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구청장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수,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계획 수립
- 위생관리등급평가 1월 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위생관리등급평가표를 평가대상업체에 서면 통지

○ 평가항목

- 기본조사 항목 : 업체 현황, 종업원수, 식품의종류, 생산능력 등
- 기본관리 평가항목 :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서류, 환경 및 시설평가)
- 우수관리 평가항목 :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위생관리 여부

○ 평가결과 통보

- 평가업체명, 영업자성명, 평가일시, 평가자성명, 위생관리등급(자율, 일반, 중점관리업체)을 평가완료 후 서면으로 업체통보

□ 행정사항

- 자치구는 평가결과 및 현황을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서울시에 보고
- 시는 평가결과 및 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식약처에 보고

## 4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 □ 추진배경

-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OEM)의 사전 위생관리 강화
  -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제거
-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차단
-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상존
  -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사전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식약처고시 제2013-82호)
  - － 식품위생법 제22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 (출입·검사·수거 등)
  -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EM) 수입업체 사후관리
  - － OEM 수입식품 수입영업자의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여부 확인
- 수거목표 : 총 1,905건 (건강기능식품 555건, 수입식품 1,350건)
  - － 서울시 155건, 자치구 1,750건 (구별 70건)
  - ※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 업무와 연계 추진
-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 한글 표시사항 등 식품표시기준 적정여부 집중점검
  - －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 실시
  -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업무와 연계 추진
- 예 산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 활용

## 2013년도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 ▶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 수입식품 : 총 2,015개소 점검 / 위반 359개소 (위반율 17.8%)
- └ 건강기능식품 : 총 6,031개소 점검 / 위반 245개소 (위반율 4.1%) :

###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시설물멸실 외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음.

## □ '14년 추진계획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EM) 수입업체 위생점검 주기
  - 부적합 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식품 등 : 1년 마다
  - 기타 1년 주기 이외의 식품 등 : 2년 마다
-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
  - 대상 :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내용 : 상대적으로 위생상태가 취약한 중국산 수입식품 위주 중점수거
  - 검사항목 : 제품별 규격기준 및 위해항목 등
-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공무원2, 소비자감시원2)
  - 무표시, 한글미표시 수입식품 판매여부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여부 등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운영
  - 서울시 2명, 자치구별 1명 전담요원 지정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위반자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 강화

## □ 행정사항

- 서울시는 다음 자치구 자료를 수합 매 분기 및 반기 종료후 15일내 식약처에 보고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 분기보고
  -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결과』 - 반기보고



## 5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안전관리

### □ 추진배경

- GMO 식품 수입 증가 및 소비자 관심 증가
  - 수입량(콩·옥수수) : '11년 1,875천톤 → '12년 1,904천톤
- 제조·유통단계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안전성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중점관리대상 업체 선정 년2회 지도·점검(상·하반기)
  - 유전자재조합표시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표시관리대상 원료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등) 제조·가공업체 등
    - \* 품목제조보고상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관리대상 원료사용이 많은 업체 등
  -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조용 원료(유전자재조합) 사용업체
  - 집단급식소(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 식품 수거·검사 : 총 100건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유통식품 25건
  - 자치구 : 관내 제조업체 식품 75건 (자치구별 3건 이상)

## 2013년도 추진실적

- ▶ GMO식품 수거검사 실시(목표 100건, 실적 169건)
  - 검사결과 : 정성검사(144건 검사 60건 검출)  
정량검사(25건 검사 기준초과 0건)
- ▶ 관련식품 표시제도 지도점검 : 72개소(위반사항 없음)

### □ 점검 및 수거·검사방법

- 관내 제조·가공업소 등의 품목제조보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대상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원료수불대장 등을 통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 \* 대두, 옥수수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대두박, 옥수수전분 등)등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수입된 유전자재조합 자사제조용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종 완제품의 표시 여부 확인
- 관리대상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관련 원료는 수거검사 실시
  - \* 증명서류가 미비하거나, 진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거·검사 병행 실시
- GMO-Free, Non-GMO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강조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거·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 확인
-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조·생산한 식품을 위주로 수거·검사 실시

### □ 행정사항

- 자치구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에 보고
  -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통보처분을 한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표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신소재식품과)에 즉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처분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식품위생법」 제84조)
  - 행정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 관리
- 시는 자치구 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 6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 □ 추진배경

- 위해식품의 신속회수 조치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 및 영업자 회수조치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
  -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폐기처분 등)
  - 식품위생법 제73조 (위해식품 등의 공포)
- 회수구분 및 회수대상

구 분	강제회수	자진회수
내 용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회 수 개시주체	회수명령기관(지방청, 시·군·구)	영업자
행정처분	감면처분 불가	회수결과에 따라 감면처분 가능
회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li> <li>○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li> </ul>	

- 예 산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 활용

### 2013년도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 ▶ 위해식품 회수실적
  - 총 39건 (강제 35건, 자진 4건 / 국내 22건, 수입 17건)
  - 생산량 175,800kg / 회수량 51,514kg (회수율 29.3%)
- ▶ 대부분의 회수대상 식품이 회수명령전 판매소진으로 확인됨에 따라 생산량대비 회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회수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 '14년 추진계획

### ○ 회수절차 및 관리

#### ▶ 강제회수 (행정기관)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검사결과통보 (회수인식)	검사(적발)기관 → 관할기간	검사결과 및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실시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명령과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3	홈페이지 공개	관할기관 → 식약청 및 시도	회수사실 홈페이지 공개 요청
4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영업자가 관할기관(회수명령기관)에 회수계획서 제출
5	회수 효율성 점검 (회수 모니터링)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6	회수결과 보고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7	회수결과 검증	관할기관 → 영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회수 물품 압류
8	회수 제품 폐기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9	시정 및 예방조치	영업자 → 관할기관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10	행정처분	관할기관 → 영업자	행정처분 실시 (강제회수는 행정처분 감면 대상 아님)

#### ▶ 자진회수 (영업주)

절 차		관련기관	내 용
1	회수인식 및 결정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회수 결정
2	회수계획서 제출	영업자 → 관할기관	회수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위해식품 공표	관할기관 → 사업자	식품위생법 제73조에 해당되는 경우 위해식품 공표 명령 실시
4	홈페이지 공개	사업자 → 식약청 / 관할기관 → 식약청 및 시도	사업자 : 식약청 홈페이지 공개 요청 관할 기관 : 식약청 및 시도 홈페이지 공개 요청
5	회수 효율성 점검 (회수 모니터링)	관할기관 → 사업자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수 과정 모니터링 실시
6	회수결과 보고	사업자 → 관할기관	회수 완료 후 결과 관할 기관에 제출
7	회수결과 검증	관할기관 → 사업자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증 및 회수 물품 압류
8	회수 제품 폐기	사업자 → 관할기관	회수 제품 폐기(매립, 소각 등) 후 최종 폐기 결과 제출
9	시정 및 예방조치	사업자 → 관할기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10	행정처분	관할기관 → 사업자	행정처분 실시 (회수량에 따라 감면 처분)

## □ 행정사항

- 세부 회수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 에 따라 실시
- 신속한 회수 관리를 위해 회수업무 전담반을 편성·운영할 것
- 회수종료와 동시에 회수 결과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할 것
- 서울시는 자치구 『위해식품 등의 회수 현황』 을 수합 매 분기 종료 후 15일내 식약처에 보고

## 7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 추진배경

-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운영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만연
  - 인터넷, 방송, 신문 등 광고매체 및 떼다방, 방문판매 등 집중점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 및 시니어 감시단 운영
- 「모니터링정보망협업시스템」 통한 과대광고 행위 신속조치
-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예 산 : 82백만원
  - 허위·과대광고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56백만원 (국비50%, 시비50%)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요원 활동비 : 26백만원(시비100%-식품진흥기금)

### 2013년도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2,186건
  - 인터넷 2,158건, 신문 25건, 방송 2건, 기타 1건
- ▶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 428건
  - 고발송치 148건, 영업정지 68건, 기타 212건
- ▶ 허위·과대광고 주의 협조 공한문 : 20,000개소
  -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 ▶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영업주 허위·과대광고 성행 지속적 관리 필요

### '14년 추진계획

- 광고매체 일일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서울시2명, 자치구별1명) 및 모니터링 결과 기록관리

모니터 일자	모니터요원 (성명)	광고 매체	매체 명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조치 사항	비고
						※ 적합부적합 기재 (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회수제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일 경우 해당내용 구분표시

○ **취약장소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사 모니터링 및 단속**

- 취약장소 :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에서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및 가두판매와 ‘뺏다방(신중홍보관)’, 관광(효도)여행지 등
- 단속조치 : 경로당 등에서 신고 되는 ‘뺏다방(홍보관)’ 등의 영업행위는 신속히 단속하고 모니터링정보망에 등록 관리

※ 시니어감시단구성 : 140명 (자치구별 5~6명)

○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대상 :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영업자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
- 주요내용 :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벌칙기준 등
- 교육·홍보 방법
  - 다단계 판매업자 서울시 주관 년2회, 통신판매업자 자치구 주관 년2회 실시
  -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지도·계몽 및 홍보물 배포
  - 기관 홈페이지 등을 교육에 적극 활용 등

※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정보 활용 (과대광고 범위, 처분기준, 위반사례 등의 정보제공)

**행정사항**

- 「모니터링정보망협업시스템」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완료한 후 그 결과 등록

※ 민원신고로 적발된 사항을 반드시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자치구는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내 서울시에 제출
- 시는 자체실적과 자치구 실적을 집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내 식약처 제출
-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창’ 배너 연계)

## 8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 추진배경

- 식품위생 취약지역으로 영세 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 행정보다 예방적 식품안전 지도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안전관리지침 (위생취약분야, 전통시장 안전관리)
- 사업대상 : 129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 추진기간 : 2014.2 ~ 12월
- 예 산 : 25백만원 (시비100%)

#### 2013년도 추진실적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식품안전 지도·계몽(분기1회)
  - 전통시장 위생관리매뉴얼 배부 : 15,000매
  - 자율지도점검포 배부 : 3,500개소
- ▶ 식품정보 표지판 제작 배부(7월) : 5,000매
- ▶ 전담관리원 교육 및 간담회(8월) : 2회
- ▶ 위생마스크 구매·배부(9월) : 1,400개

### '14년 추진계획

- 5개 선도시장 식품 정기적 위생검사 실시(분기 1회)
  - 식품안전과 수거검사 의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식품안전 지도·계몽
  - 서울시 : 5개시장 / 자치구 : 122개시장
  - 시장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지정 운영



○ 상인교육 강화

- 『주경야독 상인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식품안전분야 추가
- 상인회 협조 5개 선도시장 상인 집합교육 실시
- 기타 희망시장 에 대해 교육 실시

○ 위생매뉴얼 및 위생용품 배부

- 골목형 전통시장 식품취급 전 업소 배부

‘14년 달라지는 사항(’13년 대비)

▶ 위생점검 방식 개선 → 상인들의 부담 경감, 자발적인 위생수준 제고

현 행	개 선
▪ 식품별 개별점검	▪ 농·수·축산물·가공식품 통합점검
▪ 단속위주 점검	▪ 교육·지원위주의 위생관리

□ 추진일정

- 시장별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지정(3월)
- 정기적 위생검사 및 식품안전지도·계몽(3~11월)
- 위생관리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4월)

□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서식 3-4-7]에 따라 반기 종료 15일까지 시에 보고

## 9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 □ 추진배경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 사업대상 : 7,607개 식품자동판매기
- 추진기간 : 2014.2 ~ 12월
- 예 산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 활용

#### 2013년도 추진실적·문제점

- ▶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2회 실시
  - '13년 상반기 : 5,161대 점검(위반 897대)
  - '13년 하반기 : 1,075대 점검(위반 294대)
- ▶ 문제점 : 1일 1회 내부 청소 미실시, 지속적인 자판기 위생관리 필요

### □ '14년 추진계획

-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위생불량 자판기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점검방법 : 민·관 합동, 1~2차 단계별 추진, 시·구 역할 분담
    - ┌ 1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반사항 등 지도·계몽 활동
    - └ 2차 : 위반사항에 대해 공무원 확인 점검 후 미개선시 행정조치
  -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자판기(서울시), 그 외 설치 자판기(자치구)

- 무신고 설치·운영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강화
  - 1차 영업신고 유도하고 10일 경과 후 미이행시 고발조치
- 영업신고 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 관리
  -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점검

#### 추진일정

- 2014. 5월, 10월 :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 연 2회(반기) 점검 ⇒ 위반사항 1개월 이내 재점검
- 2014. 6월, 12월 :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보고

####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 수거·검사 사항 태플릿 PC에 입력

## 10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관리

### □ 추진배경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조치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 활성화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한 신고율 향상도모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3-51호 2003.10.29.제정 / 제2013-95호, 2013.4.5.개정)
-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관리
  -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식약처]
  - 식약처 및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구축운영
- 식품제도가공업체 등의 이물관리
  - 소비·유통·제조단계로 구분 단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조사
  - 이물 혼입 원인조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등의 제조단계는 식약처(관할지방청)에서 실시
- 예 산 : 62,300천원 (일반 5,500/기금 56,800)-자치구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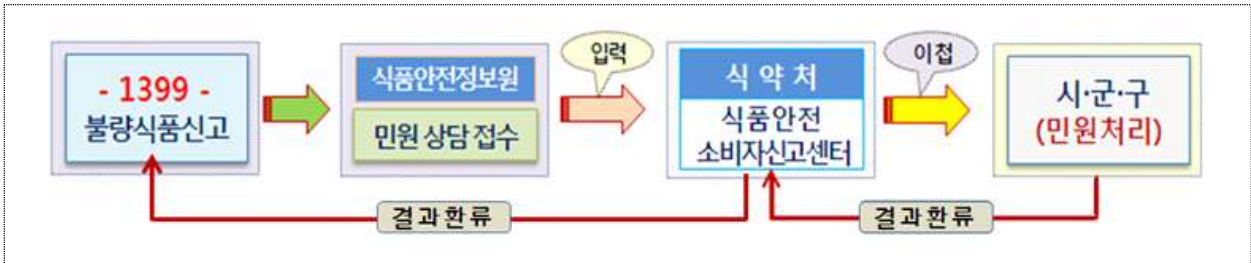
### 2013년도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 ▶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 : 713건
  - 무허가(무신고) 영업 391, 이물혼입 149, 기타 173
- ▶ 위반업소 행정처분 : 713건
  - 영업정지 45, 시정명령 532, 고발 135, 진행중 1
- ▶ 부정·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 143건 7,040천원
  - 일반 : 116건 4,370천원 / 건기 : 27건 2,670천원

## □ '14년 추진계획

### ○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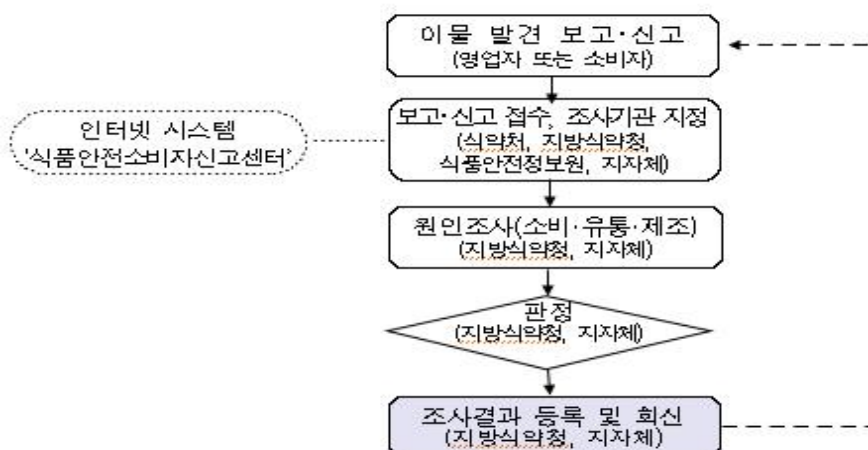
- 전문상담원(12명)이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신고센터에 상주 전담근무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콜백 서비스 연결 또는 인터넷 신고방법 안내)
- ※ 콜백 : 휴일, 야간 등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발신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다시 연결하는 서비스

### ○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구축 운영

- 식약처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구축
- 도메인 : <http://www.mfds.go.kr/cfscr/index.do>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전자민원창구 등에 상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연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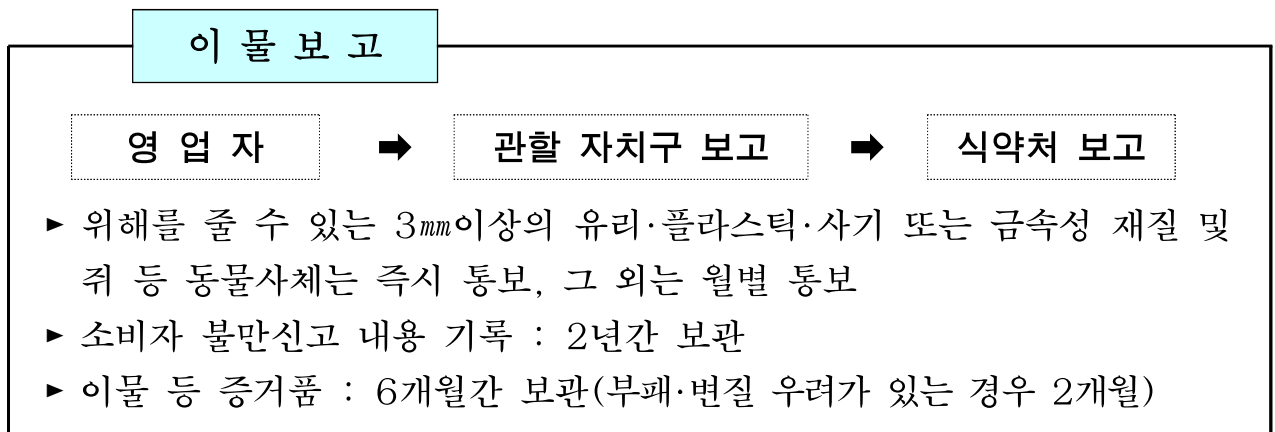
###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이물 관리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체계>



## □ 행정사항

-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민원접수사항 수시확인 및 신속처리 결과입력
- 이물 혼입 원인조사 :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실시
- 이물 보고, 원인조사 방법 등 세부내용은 식약처 고시(「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와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참조



- 서울시는 자치구 『부정·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등 운영 실적』을 수합 매 분기 종료 후 15일내 식약처에 보고

## VI. 행정 사항

### □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

번호	보고 사항	관련서식	지침 (페이지)	보고기관	보고주기
1	해썹 의무적용대상 영업자 현황	2-9-1	p64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2	해썹 지정업체 행정처분사항 (폐업포함) 보고	2-9-2	p65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3	식품 등의 수거·검사 관리통계 현황	수거총 괄서식	p214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4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3-3-9	p195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5	위해식품 등의 회수현황	3-5-3	p215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6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및 교육(홍보)실적	3-5-4	p216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7	유전자재조합식품등 표시기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실적	6-2-2	p408 ~p412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분기
8	제조업체 위생등급 평가 결과 및 평가현황	3-3-1 3-3-2	p177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반기
9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추진실적	3-3-7	p193	자치구→서울시	반기
10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3-4-7	p206	자치구→서울시	반기
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3-7-2	p220 ~p221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반기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3-7-3	p222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반기
13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OEM 수입식품) 수입업체 사후관리 현황	5-1-1	p331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반기
14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현황 보고	2-9-1	p64 ~p65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연1회 (매년2월 말)
15	특별관리업체 안전관리 추진실적	3-3-6	p192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연보
16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 결과	3-3-8	p194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연보
17	부정·불량식품 등 기획단속 실적	3-6-1	p217	자치구 → 서울시 → 식약처	연보

※ 분기·반기 보고는 종료 후 10일까지 및 연보는 익년도 10일까지 보고